

「KB 청년도약계좌」 특약 변경 안내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21 조 제 1 항에 의거 약관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KB 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kbstar.com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 예금/채권 > 약관)에서 조회 및 교부 가능합니다.

— 다 음 —

□ 대상약관: 「KB 청년도약계좌」 특약

□ 시 행 일: 2026. 6. 22. (월)

□ 기존고객 적용 여부: 여

□ 변경내용: 제 7 조 우대금리, 제 9 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 제 10 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

현 행	변 경																				
제1조~제6조 (생략) 제7조 우대이율 아래 항목별로 제공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제1조~제6조 (현행과 동일) 제7조 우대금리 ① 우대금리는 최고 연 1.5%p이며, 아래 항목별로 제공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일 당시 지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금리 를 적용합니다. 단, 모든 우대금리 는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table><tr><th>항 목</th><th>제공 조건</th></tr><tr><td>급여이체</td><td>(생략)</td></tr><tr><td>자동납부</td><td>(생략)</td></tr><tr><td>거래감사</td><td>(생략)</td></tr><tr><td>소득플러스</td><td>(생략)</td></tr></table>	항 목	제공 조건	급여이체	(생략)	자동납부	(생략)	거래감사	(생략)	소득플러스	(생략)	<table><tr><th>항 목</th><th>제공 조건</th></tr><tr><td>급여이체 (연 0.6%p)</td><td>(현행과 동일)</td></tr><tr><td>자동납부 (연 0.3%p)</td><td>(현행과 동일)</td></tr><tr><td>거래감사 (연 0.1%p)</td><td>(현행과 동일)</td></tr><tr><td>소득플러스 (최고 연 0.5%p)</td><td>(현행과 동일)</td></tr></table>	항 목	제공 조건	급여이체 (연 0.6%p)	(현행과 동일)	자동납부 (연 0.3%p)	(현행과 동일)	거래감사 (연 0.1%p)	(현행과 동일)	소득플러스 (최고 연 0.5%p)	(현행과 동일)
항 목	제공 조건																				
급여이체	(생략)																				
자동납부	(생략)																				
거래감사	(생략)																				
소득플러스	(생략)																				
항 목	제공 조건																				
급여이체 (연 0.6%p)	(현행과 동일)																				
자동납부 (연 0.3%p)	(현행과 동일)																				
거래감사 (연 0.1%p)	(현행과 동일)																				
소득플러스 (최고 연 0.5%p)	(현행과 동일)																				
(이하생략)	(현행과 동일)																				
(추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3호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가입유지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③ 본조 제2항에서 우대금리의 제공 조건이 가입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경우 가입 시 달성여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외 우대금리의 경우 특별중도해지일로부터 우대금리 실적산정 종료일까지 향후 발생할 실적 횟수는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며, 우대금리 제공 조건을 실제로 달성한 횟수와 합산하여 우대금리 제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특별중도해지시점에 우대금리 제공 조건 관련 실적이 없는																				

제8조 (생략) 제9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 ① (생략) 1.~2. (생략) 3. (추가) ②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생략) ①~③ (생략) ④ 정부기여금은 은행이 진흥원을 대신하여 이 적금의 만기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에만 지급합니다. ⑤ 정부기여금 지급 시 기본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는 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만기일(특별중도해지 및 3년경과 해지의 경우 해지일)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합니다. (추가) ⑥~⑧ (생략) 제11조~제14조 (생략) 부 칙 (생략) <u>(추가)</u>	우대금리는 제외합니다. 제8조 (현행과 동일) 제9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 ① (현행과 동일) 1.~2. (현행과 동일) 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이하 “청년미래적금”이라 합니다)에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요건을 갖추어 특정기간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 ②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현행과 동일) ①~③ (현행과 동일) ④ 정부기여금은 은행이 진흥원을 대신하여 이 적금의 만기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에만 지급하며, 정부기여금에도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⑤ 정부기여금 지급 시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만기일(특별중도해지 및 3년 경과 해지의 경우 해지일을 의미함)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적용합니다. ⑥ 만기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제6조제4항에 따른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본조 제5항의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에 더하여 적용합니다. ⑦~⑨ (번호 채하) 제11조~제14조 (현행과 동일) 부 칙 (현행과 동일) <u>부 칙</u> 이 약관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변경된 약관은 기존 가입고객에도 적용합니다.
---	---

※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21 조 제 4 항에 의거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1 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KB 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B 국민은행